

보도시점 2025. 2. 16.(일) 11:00  
2. 17.(월) 조간

배포 2025. 2. 14.(금) 16:00

## 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시스템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정보도 변경등록 처리
-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처리 연간 45만 시간 절감 효과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 1996.1.1.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상속, 고령 등으로 영농불가사유 발생 농지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 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3개소 방문, 2~10일 소요 → (개선) 1개소 방문, 0.5일 소요

산출근거: (24년) 3개소×4시간×56,879=682,548시간 → (25년) 1개소×4시간×56,879=227,516시간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 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 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농관원-농어촌공사 공동제작 홍보 안내문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54-429-4191)
		담당자	사무관	이성숙 (054-429-4199)



(앞/농관원-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 농지 임대수탁 계약하셨나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이제 **계약 당일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농지 임대수탁계약

한국농어촌공사



계약정보 실시간 조회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전화 또는 방문)

- 1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1644-8778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 2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농관이죠?

오늘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했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면에 거주하는 홍길동이고 계약한 농지는 ○○면 ○○리 ○○번지입니다. 식재 품목은 ○○입니다..."



**Q** 현재 농업경영체가 없습니다. 신규등록 신청도 전화로 가능한가요?

**A** 신규등록 신청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uni.agrix.go.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농지대장 변경도 별도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임대수탁계약 농지는 농지대장 변경이 자동 처리되나, 변경 처리에 2~1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동변경이 불가한 일부 계약건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농지대장 등재)

**Q** 공익직불금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A**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인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1644-8778

#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개인간 임대차 가능 농지

개인간 임대차 계약 → 농지대장 등재(지자체)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농관원)

## 임대수탁계약 가능 농지

농지 임대수탁 계약(농어촌공사)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농관원)



- ☑ 개인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 농지은행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

##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가능)
-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

농지은행에 문의하세요! 1577-7770

##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불가 농지



- ☑ 취득일로부터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
- ☑ 법인 소유 농지('96.1.1 이후 취득)
- ☑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일부 지분
- ☑ 농업취득자격증명의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농지 (단, 위탁자가 농업인으로 농업목적으로 전환된 경우 농지임대수탁 사업 참여 가능)
-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농지

##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



- ☑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업 경영한 농지
- ☑ 징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따른 영농 불가 농지
- ☑ 상속으로 취득하고 소유 상한(1만㎡) 이하인 농지
- ☑ 8년 이상 농업 후 이농+소유 상한(1만㎡) 이하인 농지
-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 농지
-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한 농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kr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N 농지은행 문의 1577-7770